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경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809

발 의 년 월 일 :2021년 10월 15일
발 의 자 :김 · 경 의원(1명)
찬 성 자 :김경우, 김기대, 김인제, 김재형, 김정태, 김제리, 김태수, 김희걸, 문장길, 박기열, 박기재, 박상구, 박순규, 성흠제, 송도호, 송명화, 송아량, 송재혁, 송정빈, 양민규, 유정희, 이영실, 이정인, 이준형, 장상기, 전병주, 전석기, 최 · 선, 최웅식, 홍성룡, 황규복 의원(31명)

1. 제안이유

○ 세계보건기구(WTO)가 권고한 1인당 생활권 도시림 기준은 9㎡ 이나 서울시는 그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.38㎡ 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○ 또한 산림청의 전국 생활권 도시림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, 서울시의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전국 17개 시·도 가운데 최하위에 해당되므로 도심 녹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.

○ 이에 서울시가 외곽에 위치하는 중·대규모의 산림 및 자연녹지들과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생활공원 녹지를 효율적으로 연결해 그린인프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하는 노력 의무를 명시화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서울시의 관내 생활공원 녹지를 비롯한 산림 및 자연녹지들의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향 또는 노력 의무에 대해 규정함.(안 제4조 제2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도시녹화계획은 녹지와 녹지의 연결성 향상을 통해 녹지들이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녹지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) (생 략) <신 설>	제4조(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도시녹화계획은 녹지와 녹지의 연결성 향상을 통해 녹지들이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녹지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.